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29호
- 나. 제안자 : 이성배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 2. 제안이유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가함(안 제4조)
- 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5조)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정비하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제4조·안 제14조)

-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제6조제1호)<sup>1)</sup>.
-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5조제2항).

---

1)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반영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시의 책무에 반영하고 있음(안 제4조).
- 또한,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제3호), 자치구에 평가결과를 통보해 조례·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제2항).
-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조례에 규율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구까지 그 효과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다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례의 지역적 규율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 우위를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sup>2)</sup>과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2)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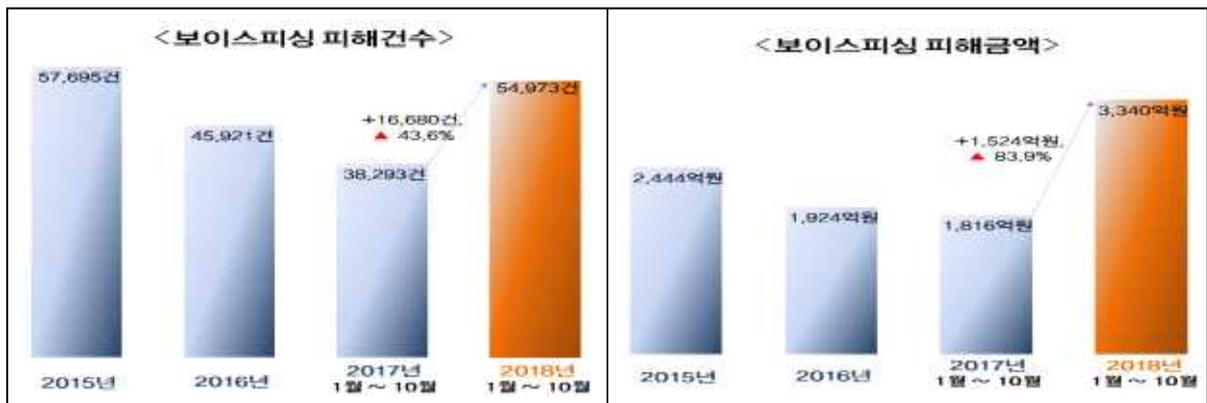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다.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안 제7조·안 제8조)

-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SMS 뿐만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 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고 사기 수법이 발전하면서 2018년부터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2015~2018년)>



자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협의회(2018.12.19.),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강화, 엄정 단속, 피해 구제 절차 정비,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2018.12.19.).
-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민의 10% 내외는 아직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있으며<sup>3)</sup> 최근에는 20~30대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sup>4)</sup>,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 걸쳐 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2018.3월 경찰청(1천여명 국민 대상), 2018.9월 금감원(1천여명 대학생 대상) 조사

4) 20·30대(730억)가 60대 이상(720억)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음 (2018.10월 기준)

- 서울시는 2018년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매년 심사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2018년 금융사기 예방 교육 관련 추진 현황>

추진기관 (보조금)	교육분야	대 상	주요 추진실적
금융소비자연맹 (2,700만원)	불법대부업 피해예방	어르신, 대학생, 청소년 등	·대출사기 및 불법대부업(사금융) 대처요령 등 ·어르신, 대학생 등 33회 4,050명 교육
금융소비자원 (2,213만원)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어르신, 고등학생, 새터민 등	·사례를 통한 금융피해예방교육 ·어르신, 고등학생 등 12회 1,680명 교육

- 개정안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7조)과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안 제8조)를 조례상에 명시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안 제25조)**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시책의 건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소비자 문제의 조사·연구,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 등의 기능을 보장받고 있음 (법 제28조제1항).

- 소비자단체 활동의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제도<sup>5)</sup>가 마련되어 있고, 등록 소비자단체에게만 소비자 문제의 자율적 분쟁조정 권한(제31조), 보조금 지원(제32조)을 허용하고 있음.
- 법 제29조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록여부 결정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수지계획서 및 결산서, 회원명부, 공익활동실적 증명 서류 등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안 제25조).
- 다만, 소비자단체 등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2015년 8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과 소비자단체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

5)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외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에 등록함(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현재 서울시 등록 단체는 9개임(붙임자료 2 참조)

## <붙임자료 1>

### - 「소비자기본법」 관련 규정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

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紛爭調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 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사용목적·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 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붙임자료 2>

<소비자단체 등록 현황>

	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등록연도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소비자단체간의 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운동을 효과적 전개	1987
2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1997
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주부대상 교육사업,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1987
4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지속가능소비 및 시민권익보호운동, 청소년보호운동	1987
5	소비자교육중앙회	주경순	소비자·환경운동, 여성지위향상사업	1987
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소비자 지도자양성, 소비자주권을 위한 교육	1995
7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소비자문제의 조사연구, 소비자 정보제공	1987
8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법개정 추진	1987
9	한국YMCA전국연맹	김홍수	생태환경 보전사업, 녹색소비 캠페인 및 조사활동	1987
10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소비자정책연구, 소비자 교육 및 상담	1987
11	한국부인회	남인숙	여성능력향상 및 권익보호, 소비자교육 및 캠페인	1987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도모, 여성단체의 의견개진	1987
13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임태수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환경보호 및 소비자교육	2010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영준 등 공동대표 5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활동 전개	2014
15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책·제도연구	2010
16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책·제도연구	2014
17	한국소비자과워센터	정부자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정보제공 사회 단체사업으로 원산지표시 정착운동, 생필품가격조사 등	1996
18	한국씨니어연합	손인춘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재취업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노인정책 특히 여성의 노년생활 준비와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2001
19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정화원	시장공급제품 조사·연구, 친(親)장애인 제품개발 촉구 장애인소비자 고충처리 상담	2005
20	미래소비자행동	김영주 등 공동대표 3인	소비자문제 조사연구 물품, 거래조건, 방법 등에 관한 조사분석	2010
21	한국노년복지연합	이희규	노년층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 노년층 대상 취미, 오락, 여가활동, 각종 공연 지원사업	2014
22	서울YMCA	이석하	시민·소비자 운동, 사회체육·평생교육 운동 등	2014
23	한국소비자협회	신현두	소비자교육 및 계몽, 시장 및 상품정보 제공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2014
24	소비자와 함께	권대우 등 공동대표 5인	소비자교육, 청년 소비자육성, 소비자 관련 토론회 등	2016
25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명채	제도와 정책의 연구·조사 및 대안 제시 국회, 정부기관, 사법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활동 감시 및 참여	2018

※ 1~16번은 공정위 등록 단체, 17~25번은 서울시 등록 단체임

(3개 이상의 사도에 지부를 설치한 소비자단체 및 전국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공정위 등록)